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2.6.29>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span>제 호</span> </div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0;">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</h2>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 )
	주소			전화번호
용도	채용시험 가점	가점비율	%	
제출처	“한국원자력안전재단” 반드시 기재			
<p>위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<span style="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</span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5px; margin-left: 10px; 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직인</div> </div>				
<p>※ 유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2.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job.mpva.go.kr">http://job.mpva.go.kr</a>)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/ol>				
우	주소	전화	전송	
담당부서명:	과장:	주무:	담당자:	전자우편 주소: